

#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정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9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1.

발의자 : 정인화 · 홍문표 · 진선미  
주승용 · 황주홍 · 윤영일  
최도자 · 이용주 · 김종회  
송기석 · 이동섭 · 박준영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·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,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조).

법률 제 호

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

漁業資源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漁業資源保護法”을 “어업자원보호법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懲役, 禁錮 또는 50萬환以下의”를 “懲役 또는 3천만원以下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漁業資源保護法</u></p> <p>第3條(罰則) 前條에 違反한 者는      3年以下의 懲役, 禁錮 또는 50  <u>萬환</u>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그      所有 또는 所持하고 있는 漁船,      漁具, 採捕物, 養殖物 및 그 製      品은 이를 没收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어업자원보호법</u></p> <p>第3條(罰則) -----      ----- 懲役 또는 3천만원  <u>以下의</u>-----      -----      -----      -----.</p>